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1. 12 선고 2022가합26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유한회사 B

변론 종결 2024. 10. 22.

판결 선고 2024. 11. 12.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1,035,069,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4.부터 2024.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안의 배경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도급인)는 피고(수급인)와 2021. 8. 31. 아산시 C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갑1)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A공장 신축공사 및 토목공사
 2. 공사장소: 아산시 C
 3. 착공년월일: 2021. 9. 1.
 4. 공사완료예정일: 2021. 12. 17.
 5. 계약금액: 일금 이십육억오천만원정(₩2,650,000,000, 부가세 별도)
 - 공급가액: 일금 이십육억오천만원정(₩2,650,000,000)
 - 부가가치세: 일금 이억육천오백만원정(₩265,000,000)
 6. 계약이행보증증권: 공사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 보증증권 제출
 7. 계약금 : 일금 칠억구천오백만원정(₩795,000,000, 부가세 별도)
 8. 기성부분금 : 1차 - 칠억구천오백만원정(₩795,000,000, 부가세 별도)
 - 2차 - 칠억구천오백만원정(₩795,000,000, 부가세 별도)
 - 잔금 - 이억육천오백만원정(₩265,000,00) 공사완료 후 14일 이내 지급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3,050,620,000원을 지급하였다(갑2).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않아 원고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추가 공사비를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얻었고, 피고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1,035,069,78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이견이 있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던 중에 원고가 하도급업체들이 요청한 과도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공사대금 자체가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갑20, 변론취지), 공사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65.64%이다(감정 결과). 따라서 피고가 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1,913,406,000원(= 2,915,000,000원× 65.64%, 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공사비 등의 상승으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하도급업체들 사이의 분쟁의 경위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보유할 권한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초과 수령한 공사대금 중 1,035,069,7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1.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아람

판사이영곤

판사이두현